

## 도로지정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

1. 우리구 홍제동 273-55호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「건축법」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, 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3(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) 및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제27조(도로의 지정)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, 관련내용에 대해 토지 등 관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청취를 실시합니다.
2. 홍제동 273-55호 도로지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8월 16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1. 공람기간 : 2019. 08. 16. ~ 2019. 09. 06.
2. 공람장소 : 서대문구청 건축과 (☎330-1956, 1951)
3. 공람내용
  - 1) 위치 : 홍제동 273-55호
  - 2) 지목 : 대
  - 3) 소유주 : 국토교통부
  - 4) 면적 : 172㎡
  - 5) 도로 길이 : 약73미터
  - 6) 도로 고저차 : 약11미터
  - 7) 도로지정 내용

도로폭(지적)	도로지정(안)	비고
약1.2미터~2.7미터	3미터	지형적조건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설치가 곤란

(지정사유)

- 홍제동 273-55호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「건축법」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 규정에 따라 도로지정

- 홍제동 273-55호는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3(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) 규정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·공고하는 구간의 너비를 3미터로 도로 지정

4. 관계서류(생략) :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

5. 의견제출처 : 서대문구청 건축과(☎ 02-330-1956, 1951)

※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공람 장소에 비치합니다.

붙임 의견서(서식) 1부. 끝.